

(앞쪽)

제 호
건축물출입검사원증
사 진 3cm×4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성 명
기 관 명

60mm×90mm(청상지 120g/㎡)

(뒤쪽)

건축물출입검사원증
소속/직급:
성 명:
생년월일:
유효기간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위 사람은 「건축법」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·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
년 월 일
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 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※ 연락처: